

2009 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례 보고서 개관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IRFA,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 창립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또는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 협약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독립적, 초당적인 미국 정부의 위원회이며 대통령, 국무장관 및 의회에 독자적인 정책 권고를 한다.

미국 국무부와 분리된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6명은 의회가 임명한다. IRFA에 의거 설치된 국무부 지위인 국제종교자유 특사는 직권상 위원회 위원이며 의결권은 없다.

위원들은 외교문제, 인권, 종교의 자유 및 국제법 분야에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 개설 후 10년 동안, 천주교의 주교, 회교의 이맘, 유대교 인권 운동가 및 목사, 개신교 성직자, 정교회, 몰몬교, 힌두교, 불교 및 바하이를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률, 외교정책 및 기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주도 아래, 위원회는 폭넓은 문제, 국가 및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자유의 침해 사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버마의 불교도, 방글라데시의 힌두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 회교도, 베네수엘라의 유대교도, 파키스탄의 아마디교도, 중국의 위그르 회교도, 수단의 기독교도, 이란의 바하이교도를 위해 일해왔다.

이 연례보고서는 위원회가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는 국가들의 종교나 믿음의 자유 상황을 설명하고 종교나 믿음의 자유 신장이 미국 외교정책에서 좀더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 연례보고서에는 위원회가 국무장관에게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했을 경우, IRFA에 의거하여 “특별 우려국가”(CPC,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들, CPC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종교적 자유 침해로 인해 주의가 필요하여 위원회가 감시 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한 국가들, 그리고 위원회가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보고서 전문은 www.uscirf.gov에서 볼 수 있다.

2009년 연례보고서의 해당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이다.

특별 우려국가와 감시 대상국

IRFA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국무장관에게 “특히 심하게”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거나 이를 용인한 정부들을 “특별 우려국가” 혹은 CPC로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 IRFA는 “조직적이고, 진행 중이며, 극심한” 행위를 “특히 심한” 침해 행위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고문, 무고한 장기 구금, 행방불명 또는 “기타 인간의 생명, 자유, 안전권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 포함된다. 일국이 CPC로 지정되면 대통령은 법에 의해 IRFA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침해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

2009년 1월, 국무부는 과거 2006년 11월 CPC로 지정했던 8개국인 버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에리트리아, 이란,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및 우즈베키스탄을 CPC로 재지정했다. 국무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는 180일 간 제재 조치를 포기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에는 무한정 포기하기로 했다. 양 경우의 명분은 “[국제종교자유]법의 목적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포기 결과, 미국은 양국에서 발생하는 특히 심한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해 정책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

이번 보고 기간 중, 위원회는 국무장관에게 버마, DPRK(북한), 에리트리아, 이란, 이라크¹, 나이지리아², 파키스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3개국을 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CPC의 기준에는 미달하는 국가들에 의해 자행되거나 용인되는 종교 자유의 심각한 침해 사례를 면밀히 감시할 필요성을 근거로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킬 국가를 지정한다. 이들 국가 역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국무부와 기타 다각적 단체들의 외교적 조치의 대상이다. 이번 보고 기간 중 위원회의 감시 대상국에 포함되는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벨로루시,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라오스, 러시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터키 및 베네수엘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의 위원회 우려 사항

¹ 이라크에 대한 위원회 보고에 참여하는 동안, Cromartie 위원장과 Eid, Land 및 Leo 위원은 CPC 지정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라크가 위원회의 감시 대상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² Cromartie 위원장은 CPC 지정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이지리아가 위원회의 감시 대상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또는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억압적 정권 중 하나로, 반대 의견은 용인되지 않으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가 거의 보호되지 않는다. DPRK는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서약했으며 이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북한정권은 공식적으로는 제한된 수의 종교 “연맹”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 관리들이 주도하며 종종 국제 종교 및 인도주의 원조 기관들과의 외교적 연락 단체로 이용된다. 그나마 연맹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이나 예배장소는 철저히 통제되며 정권의 정치적 혹은 외교적 의제를 추진하는 데 이용된다. 기타 공적, 사적 종교활동은 금지되며 은밀히 종교 의식을 벌이다 적발되는 사람은 공식 차별, 체포, 구금 및 처형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종교의 자유가 향상되었다는 징후는 없었다. 실제로는 특히 중국과의 국경 접촉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비밀 종교활동의 확산을 막으려고 북한정권이 새로운 조치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보고에 의해 속속 지적되고 있다. 북한 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체포, 고문, 감금될 수 있다. 신도들이 처형되고 있다는 새로운 목격자 보고는 없지만 북한은 잠시 중단했던 공개 처형을 지난 해에 재개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강제 송환되는 북한 난민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이들이 남한 시민이나 외국 종교단체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특히 그렇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또는 위원회)는, 미 국무부가 2001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CPC,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과거 북한에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천도교 또는 “동학”. 주로 유교에 기초한 혼합주의 신앙이지만 도교, 무속, 불교, 천주교 요소도 포함됨)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1945년 이래 대부분 사라졌다.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은 종교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했고 이를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주체 또는 김일성 주의라는 “개인숭배”로 대체했다. 모든 인민은 이러한 믿음 체계를 신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과 구금을 포함한 기타 처벌을 받게 된다. “위대한 지도자”(김일성)와 “경애하는 지도자”(김정일) 사진을 가정, 학교, 직장의 벽에 걸어 두어야 한다. 북한 인민은 모두 위대한 지도자 모습이 담긴 편을 옷깃에 달며 학생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학습하고 암기해야 한다. 주체사상은 최고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되며 주체사상은 북한 학교들에서 여타 모든 과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김정일이 말한 것으로 북한 언론 매체에 인용되어 왔다.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전수하는 일 외에 각 북한 공동체는 “김일성 연구센터”나 유사 기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역 인민들은 여기서 매주 모임에 참석하여 선전 영화를 보고, 주체사상 원리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고 공개 자아비판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북한 정권은 신앙이나 종교의식을 김 일가를 둘러싸고 있는 개인숭배의 우월성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

종교에 대한 정권의 엄격한 통제 외에 DPRK 는 또한 국내외로의 정보 흐름을 엄중히 통제한다. 이러한 극심한 통제로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및 관련 인권에 대한 세부적 데이터의 적시 수집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2005 년 위원회는 조사단체들이 북한 내 동태와 중국 망명을 피하는 난민들을 조사하기 위한 탈북 난민과의 인터뷰를 개시하도록 허가했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 2 가지 연구가 발표되었다.³ 이 인터뷰로 김 일가를 둘러싸고 있는 “개인숭배”의 힘이 만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비밀 종교활동을 하는 인민들의 체포와 처형에 대한 목격자 증언이 확보되었다. 최근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는 난민들이 남한 지원단체와의 접촉을 시인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거나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성경을 밀반입한 경우 감금 중 학대, 중노동 및 투옥에 처해지기가 쉽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직 경찰 및 보안 장교들과의 인터뷰로 중국과의 국경 접촉을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독교가 정권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매우 유용한 정보도 확보되었다. 이들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 개종자 색출을 위해 교회에 침투하고 국경 경비대를 훈련시키며 개종자를 잡으려고 위장 기도회를 여는 등, 비밀 종교활동을 적발하는 데 사용하는 북한 정권의 술책이 상세히 드러났다.

1988 년, DPRK 는 구소련이 사용한 모델을 따라 불교, 천도교, 개신교 및 천주교 “종교 연맹”을 결성했다. 이 연맹은 순치된 위장 단체를 통해 오랫동안 억압되어온 종교 단체들을 대변한다는 점을 표방함으로써 북한의 종교의 자유 기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디게 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 연맹은 평양에 있는 교회 및 사찰 건축을 감독하며 최근에는 북한의 여타 지역 관광 명소들인 불교 사찰들을 개수했다. 1990 년대 기근이 극심했던 시기에는 이 연맹이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로부터 원조와 개발 지원금을 받는 협상을 도왔다. 난민 및 탈북자 출신들은 정치 스파이들이 이 연맹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종교활동에 대한 정권의 통제 정책을 실행하고, 해외의 인도적 지원을 얻고, 종교 단체의 건물을 문화센터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전 국가안전보장국의 한 직원은 평양 종교 집회장소의 목적은 종교적 개방성을 선전하는 것이며 외국인은 보안 요원이 아닌 사람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된 모든 종교활동은 평양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위원회에 증언했다.

불교는 한국 문화에 깊은 역사적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조직적 억압을 받아왔다. 최근 난민들의 목격자 증언에는 비밀 불교 종교활동에 대한 증언이 드물다. 사원과 사당은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않는 스님(관리원)이 문화 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 스님들은 정부가 고용하고 이들의 활동은 강연, 관광 안내 및 외국 내빈 접대에 국한된다. 난민들은 북한 정권이 2000 년 함경남도 안불 소재 사찰의 개수와 신계사의 개축 등 사원과 사당을 적극 복원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북한 정권은 일부 기독교 교회 건축을 허가하기도 했다. 1988 년부터 1992 년 사이에 1 개 천주교 교회와 2 개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으며, 평양 주재 해외 원조 관계자들이 늘어나 1990 년대 중반부터는 이들 교회에서 예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전직 정보기관 관리들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엄격히 통제되며 집중 감시된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 교회들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보이는 전시물일 뿐이라고 믿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민들은 기독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전쟁 이전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과 가족들로 제한되며 외국의 내빈들이 방문할 때 정부가 이들을 버스로 예배 장소까지 이송한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천주교의 서임 사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8년 9월에는 일단의 남한 천주교 사제들이 와서 미사를 갖도록 허용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은 2006년 8월 평양에 성삼위일체 러시아 정교회 교회 건축을 승인하기도 했다. 2005년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교회를 방문한 김정일은 북한에도 이와 유사한 교회를 짓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 2명이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교 신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했고 이들은 현재 러시아 정교회의 서임 사제로 일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또한 북한에는 500개소의 “가족 교회”가 허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가족 교회” 예배 참석을 허가 받았던 남한 학자들은 예배 참석자들이 주로 1950년 이전부터 기독교인들이었던 가족의 자제들이며 이들은 지도자나 종교 예배 자료 없이 모이도록 허용된다고 보고했다. 극소수의 이러한 “가족 교회” 신도들은 더 이상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족 교회” 신도들은 일정한 주택 구역에 모여있으며 공식 차별과 끊임 없는 감시를 받는다. 북한 정권은 특히 중국과의 국경 접촉이나 송환된 난민 개종자들을 통해 확산된 개신교의 새로운 성장을 위협으로 보며 이를 억압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원회에 접수된 난민 증언과 신빙성 있는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 종교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활동의 정도는 불분명하다. 비밀 종교 활동에는 포교용 전단지 배포, 개종 권유 또는 예배 모임 등이 포함되며 이 중 대부분은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불잡히면 강제노동 수용소 수용, 고문 및 처형까지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새로운 개신교의 종교 활동 발현은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려는 남한과 미국의 음모이며 김일성주의라는 “유일 신앙”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된다. 2006년 3월 손종남은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증거에 따라 스파이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그가 처형됐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과거에는 손종남처럼 종교적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공개 처형되었다. 하지만 신도들에 대한 공개 처형에 대해 난민들로부터 입수한 새로운 목격자 증언은 없었다. 또 이러한 처형이 비밀리에 계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목격자 정보도 없는 상태다.

2007년 나진시 북동부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캐나다 시민 김제열 씨는 북동부 나진시에서 비밀 종교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2008년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도들을 감금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무부나 기타 공식 또는 비정부 소식통 중 어느 쪽도 종교적인 이유로 구금된 신도 수를 기록할 수 없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남한 내 탈북자 그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 북부지방에 있는 “제 15호 감옥”에 6,000명으로 추산되는 기독교인들이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난민들의 증언은 종교적 이유의 죄수는 다른 동료 죄수들보다 더 가혹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이들에게는 대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주어지며 강제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며 포기를 거부하면 종종 매를 맞고 고문당한다. 또한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낙태와 영아살해 사례가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도 있다. 중국에서 개종하고 훈련을 받은 난민들의 전도 노력 증가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장기 기근과 식량 부족문제는 중국 북부에서 국경 난민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 10년 동안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기근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피신했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출했다. 중국은 모든 북한인들을 “경제적 이주자”라 보고 이들을 강제 송환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계속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 비난은 아직은 실효가 없는 상태다. UN 고문위원회 (CAT, Committee on Torture)의 중국에 대한 개관의 최종 견해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고문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고문금지협정의 체결 당사국인 중국은 북한 주민을 송환함으로써 본 협정의 제 3 조를 위반할 수 있다. CAT는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협정 제 3 조에 따라 망명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북한을 떠나는 것은 불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데 일부에게는 더욱 가혹한 벌이 내려진다. 중국에서 식량을 구하려 한 인민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처벌을 완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송환된 인민들에게는 단기 구금 또는 강제노동을 선고했다. 하지만 난민들은 북한 정권이 지난 몇 년에 걸쳐 탈출 이유와는 상관 없이 송환된 북한 주민들을 다시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남한의 인도주의 단체나 종교 단체들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종교 단체들과의 접촉으로 “오염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심문을 받으며 학대와 구금의 대상이 된다. 난민들은 보안 경찰이 이러한 심문 중 고문을 한 후 정치범용으로 지정된 강제노동 시설에 난민들을 감금한다는 증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언제나 기독교와 종교 활동을 의심해 왔지만 중국과의 국경 접촉 증대와 북한 난민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인도주의 단체나 종교 단체들의 존재로 인해 정권의 두려움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국경에서 선교 활동이나 성경 또는 기타 종교 자료 배포에 관여한 자에 대한 체포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들을 계속 포상하고 있다.

위원들과 직원들은 북한 내 종교적 자유와 관련 인권 문제에 관하여 탈북 난민들, 남한의 전문가 및 종교 지도자들과 미국 정부 관료들을 만났다. 위원회는 또 북한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중국의 의무를 최우선 국제 관심사로 삼을 것을 추구하고 중국 관리들 및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관리들을 만났다. 위원회는 2008년 4월에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자체 보고서인 “*창살 없는 감옥(A Prison Without Bars)*”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또한 이 보고서의 한국판을 발행하고 남한 정부 관리, 언론인, 민간단체 회원들과 국제 종교 자유, 송환 및 송환 난민 고문에 관한 학술회의 참석자들을 만나기 위해 2008년 5월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했다.

미국의 정책을 위한 권고안

위원회는 북한을 계속 CPC 국가로 지정할 것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I. 인권 및 인간안보 문제를 동북아 안보문제 협상과 연계할 것.

다음 사항을 실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본 위원회가 제의하고 2008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 제 106항에 적시된 바와 같이(공법 108-333, 22 USC 7801)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유럽안보기구를 모델로 하여 인권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협정이 포함된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역 및 유럽 우방들과 협력한다.
- 6자회담을 포함, 한반도 핵 안전 및 안정에 관한 협상에서 지역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감시, 난민 재정착, 가족 재회, 납치 및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기타 시급한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절박한 인권 및 인간안보 문제와 이러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진전에 미래의 경제 지원과 외교적 승인을 연계시키도록 합의한다.
- 6자회담의 공식 틀 내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감시, 난민 및 납치를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관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 대상 실무 그룹을 발족시키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에 6자회담 의제에 모두 반영하며 미래의 경제, 정치 및 외교적 지원을 이들 분야의 진전에 연계시킨다.

II. 북한 인권문제 특사의 수임 권한 이행

다음 사항을 실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2008년 북한인권법(이하 법)에 따라 인가된 모든 자금이 요청되도록 해서 본 법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
- 본 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북한 인권법 특사가 새로운 인권 및 민주주의 계획 수립, 북한 내외로의 정보 이동 촉진, 난민 보호 및 재정착에 관한 여러 외국 정부의 폭넓은 허가와 협조 강화 수단 모색을 포함하여, 북한 난민의 곤경을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외국 정부와 논의하는 등 본 법의 핵심 규정을 충분히 실행하도록 한다.

III. 북한 난민의 보호와 원조

다음 사항을 실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망명 신청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지킬 것을 중국정부에 촉구할 것. 1) UN 난민 고등판무관(U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임시 망명처를 제공하고 최종 망명국으로의 안전한 이송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2) UNHCR 이 중국 내 북한 주민들과 제한 없이 인터뷰할 수 있게 하며, 3) 쌍무협정에 따른 난민 송환이 1951 년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과 동 협정의 1967 년도 의정서 혹은 고문금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제 3 조에 따른 중국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 국제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중국 내 북한 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점증하는 사회 문제, 학대, 취약한 난민들이 겪는 착취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국 정부에 촉구하고, 지역 및 유럽 우방과 공조하여 북한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중국의 책무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및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쌍무 관계에 있어서 북한 난민들의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통행과 분명한 재정착 절차를 제공하는 데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 북한 난민의 심사, 처리절차 및 재정착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북한 난민들의 미국 추가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법적, 외교적 잔존 문제 해결을 촉진하도록 국무부, 국토안보부 및 한국을 비롯한 지역 우방들 간의 조정 작업을 지속한다.

IV. 다각적 외교 추구하고 북한의 인권

다음 사항을 실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북한과의 회담에 종교적 자유와 기타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한 평가,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감시, 그리고 개혁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권고 등을 위해 UN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s)과 기타 해당 UN 기구들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초청할 것을 북한 정권에 촉구한다.
- 납치, 인신매매, 경찰 및 국경 경비대 교육, 법 개혁, 정치범, 그리고 사상, 양심,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유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적 및 초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개시를 위해 UN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대한민국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촉구한다.

- 지역 우방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 공조하여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또는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되도록 효과적으로 감시한다.

V. 북한에 대한 공공 외교 프로그램 확대

다음 사항을 실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다음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라디오, TV, 인터넷, 활자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가 대북 단파 및 중파 방송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BBG,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예산을 추가
 -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북한 내 인권 정보의 유포를 위해 활자 및 전자 자료, DVD 및 디지털 프로그래밍의 형식으로 미국민주주의기금(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과 국무부 인권민주주의기금(Department of State Human Rights and Democracy Fund)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

VI. 한반도에서의 종교적 자유 및 관련 권리의 신장을 위한 의회의 조치

다음 사항을 실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 현직 및 전직 선출 관리들과 기타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의회 실무그룹을 결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미래 안보협정에 인권과 인간안보 문제를 포함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외교관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한반도에서의 인권과 기타 미해결 안보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만들 수 있는 여론과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
- 2008년 북한인권법에서 인가된 제반 기금을 공개 외교, 난민 지원, 민주화 계획 및 대북 특사의 관련 출장에 지속적으로 배정한다.
- 관련 의회나 의회 보좌관의 북한 방문 시 주요 관심사로서 종교적 자유와 관련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한국어판 위원회 보고서 배포 포함), 북한 관리들이 2003년 8월 상원 외교위원회의 방문 대표단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국제 감시단의 북한 구치소 방문 요청을 반복한다.

¹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목격자 증언”(David Hawk 저)과 “창살 없는 감옥- 북한의 종교 및 믿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에 관한 난민과 탈북자 증언”이라는 표제의 후속 연구서. 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2000-2007년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78명의 난민과 탈북자들과 대담을 가졌다. 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이 2개의 보고서는 모두 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uscirf.gov>에서 볼 수 있다.